

IFRS in Focus

IASB,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한 공시규정 개정

목차

- 제안사항
- 금융자산의 양도
-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 양도
-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는 양도
- 사례
- 시행일과 경과규정

요점

- 이번 개정은 금융자산의 양도거래에 관한 공시규정을 확대하고 있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제거 지침은 변경되지 않는다.
- 이번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은 자산이 양도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 IFRS 7의 기존 공시사항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거되었으나 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새로운 공시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한다.
- 이번 개정의 최초 적용일 이전의 비교기간에 대해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IAS Plus website

We had over 12 million visits to our www.iasplus.com website. Our goal is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source of news abou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on the internet. Please check in regularly.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s: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제안사항

2010년 10월 7일 IASB는 금융자산의 양도거래에 대한 공시규정을 확대하는 "공시 - 금융자산의 양도(IFRS 7 '금융상품: 공시' 개정)(*Disclosures - Transfers of Financial Assets (Amendments to the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이라는 제목의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금융자산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인이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속적관여(continuing involvement)'라고 언급) 거래의 위험노출에 관한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은 다수의 금융자산 양도거래가 보고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다수의 양도거래가 보고기간 말 근처에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분식(window dressing)을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창출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제거 프로젝트는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IASB와 FASB의 의제에 추가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IASB는 2009년 3월에 새로운 제거모형과 대체적 모형을 제안한 공개초안인 'ED/2009/3 제거(Derecognition)'를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새로운 제거모형과 대체적 모형 모두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안은 의견 제출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후, 2010년 7월에 IASB와 FASB는 공동 workplan의 우선순위 재조정 일환으로 새로운 제거모형의 개발을 늦추고 그 대신 제거관련 공시에 초점을 맞추기로 동의하였다. 그 결과 IASB는 공개초안에 포함되었던 공시에 대한 제안사항을 포함하면서 현행 US 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의 IFRS 7 개정사항을 발표하였다.

금융자산의 양도

기업의 재무제표에 금융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공시는 별도의 주석사항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공시사항은 양도자산의 제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인이 지속적관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해 요구된다. 양도인이 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를 보유하고 있는 한 자산이 양도되는 시점이 속한 보고기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보고기간에도 공시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자산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공시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계약에 따라 다른 수취인에게 현금흐름을 지급할 계약상의무를 부담한다.

기업이 "양도된 금융자산에 내재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면 양도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한 양도(fraudulent transfer)와 관련된 통상적인 의사표시(normal representation)와 보증(warranty) 뿐만 아니라 계약가격(또는 행사가격)이 양도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양도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는 선도, 옵션 및 기타 계약은 지속적관여를 구성하지 않는다.

논평

이번 개정에서 규정된 공시사항은 현행 공시규정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더욱이, 이번 개정에는 공시목적상 양도와 지속적관여의 정의를 현행 IAS 39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보다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상기에서 기술된 양도의 정의에서는 공시목적상 양도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IAS 39의 "경유(pass-through)"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IFRS 7 개정에서는 '지속적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IAS 39에 따라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일부 자산에 대해 지속적관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양도 후 양도인이 양도자산에 대한 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는 양도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공시목적상 지속적관여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 양도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서 기업은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 않는 양도거래에서 양도된 금융자산과 관련 부채 간의 관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은 (IFRS 7에 따라 결정된)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 자산의 성격
-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라 기업이 노출된 위험과 보상의 성격
-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자산의 사용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여 자산과 관련 부채 간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설명
- 관련 부채의 거래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recourse)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및 net position을 보여주는 표
-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는 경우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양도하기 전 최초 자산(original asset)의 장부금액 합계, 계속 인식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 및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논평

상기에서 기술한 공시내용은 개정 전 IFRS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추가된 공시는 상기 (c)와 (d)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는 양도

금융자산 전체가 제거되지만 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보유하는 금융자산 양도의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지속적관여에 대한 평가는 보고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 관여'는 IAS 39에서 지속적관여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으며, 양도약정 또는 양도와 연계하여 양수자 또는 제3자와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포함된 계약상 조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기업은 보고기간 말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관여의 종류(위험에 대한 노출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유형으로 통합)별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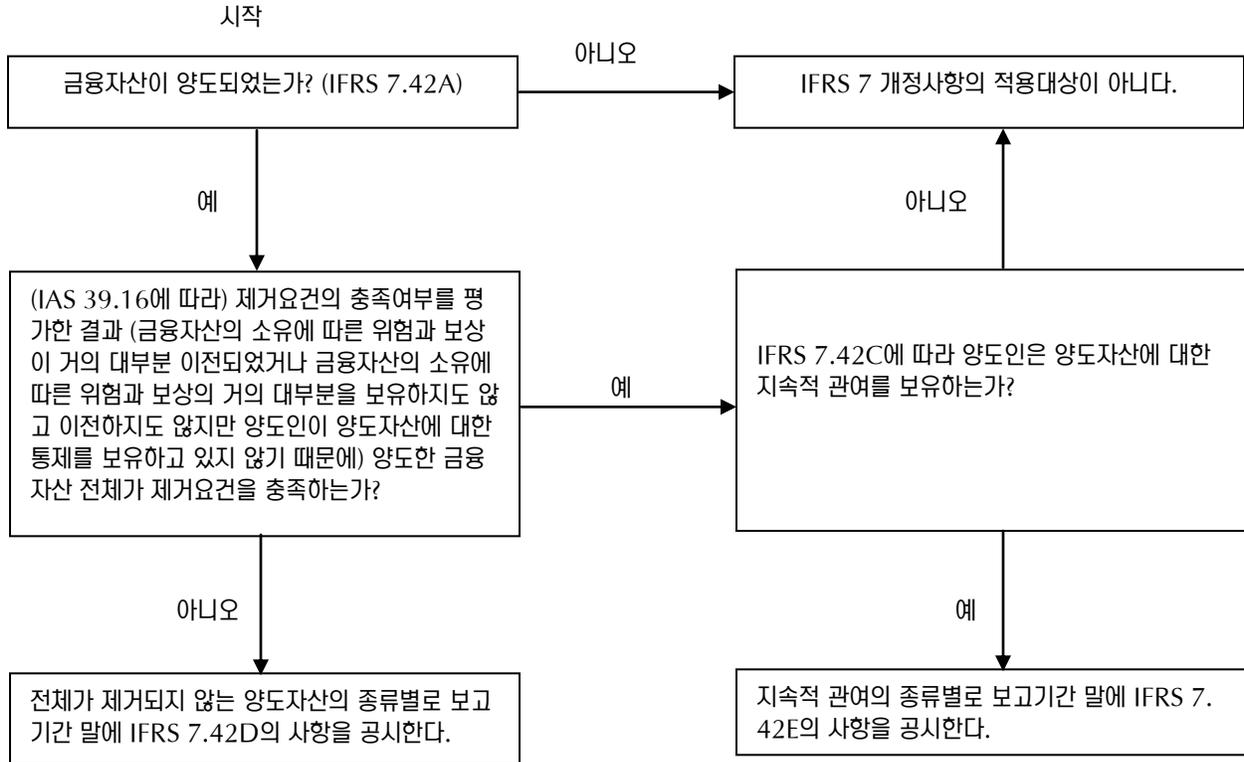
-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 지속적관여로 인한 손실의 최대 노출 정도
- 제거된 금융자산을 재매입하기 위해 예상되거나 요구될 수 있는 할인되지 않는 현금흐름과 당해 현금흐름에 대한 만기분석
- 자산 양도일에 인식된 손익
- 제거된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에서 발생하는 보고기간 중 인식된 수익과 비용
- 양적 공시를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질적 정보

이번 개정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양도거래가 보고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보고기간 중 다수의 양도활동이 발생한 시기, 보고기간 중 해당 시기에 발생한 양도활동에서 인식한 금액(예를 들어, 양도관련 손익)과 양도금액의 합계를 공시해야 한다.

논평

제거된 자산에 대한 공시규정 중 다수는 새로 IFRS 7에 도입된 것이다. 현행 IFRS 7은 제거된 자산이 아닌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FRS 7 개정은 양도인이 더 이상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자산으로 인한 위험에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양도자산에 대한) 지속적관여를 보유하고 있는 한 추가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활동의 분포에 대한 공시(예를 들어, 보고기간 말 근처에 다수의 양도활동이 집중되어 있음)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활동의 시점에 관한 보다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

IFRS 7 개정에는 또한 IAS 39를 적용하는 기업과 IFRS 9 '금융상품'을 조기 적용하는 기업 모두를 위하여 양적 공시를 표시하는 적용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번 IFRS 7 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은 허용된다. 이번 IFRS 7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 이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에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논평

역년(曆年, calendar year)을 보고기간으로 하는 기업은 2012년 12월 31일에 이번 IFRS 7 개정에 따른 공시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2011년의 비교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주요 연락처

IFRS global office

Global IFRS Leader – Clients and Markets

Joel Osnoss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Global IFRS Leader – Technical

Veronica Poole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Leader – Global IFRS Communications

Randall Sogoloff

ifrglobalofficeuk@deloitte.co.uk

IFRS centers of excellence

Asia-Pacific

Korea

이길우

kilwlee@deloitte.com (Tel: 02 6676 3980)

Hong Kong

Stephen Taylor

iasplus@deloitte.com.hk

Melbourne

Bruce Porter

iasplus@deloitte.com.au

Tokyo

Shinya Iwasaki

iasplus-tokyo@tohmatu.co.jp

Americas

New York

Robert Uhl

iasplusamericas@deloitte.com

Montreal

Robert Lefrancois

iasplus@deloitte.ca

Buenos Aires

Fermin del Valle

iasplus-LATCO@deloitte.com

Europe-Africa

Brussels

Laurent Boxus

BEIFRSBelgium@deloitte.com

Copenhagen

Jan Peter Larsen

dk_iasplus@deloitte.dk

Frankfurt

Andreas Barckow

iasplus@deloitte.de

Johannesburg

Graeme Berry

iasplus@deloitte.co.za

London

Elizabeth Chrispin

iasplus@deloitte.co.uk

Madrid

Cleber Custodio

iasplus@deloitte.es

Moscow

Michael Raikhman

iasplus@deloitte.ru

Paris

Laurence Rivat

iasplus@deloitte.fr

Rotterdam

Ralph ter Hoeven

iasplus@deloitte.nl